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9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8. .

제출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 강화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인 ‘자원봉사에 관한 사항’을 제5조제2항제2호의 복지동행국 분장사무로 이관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7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평가 제외 대상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지원, 자원봉사”를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지원에”를 “지원, 자원봉사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행정지원국) ① (생략)</p> <p>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선거, 주민등록, 동행정, 동청사 관리, 행정구역 조정, 주민자치, 마을공동체, 사회단체 <u>지원, 자원봉사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5조(복지동행국) ① (생략)</p> <p>② 복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실뿌리복지 시책 추진,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, 기초생활보장사업, 복지대상자 조사·관리 및 보장 결정, 의료급여 및 자활 지원, 차상위계층 <u>지원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행정지원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지원</u> 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복지동행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, 자원봉사</u> ----- <u>에</u>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분장사무 소속국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오진식
연 락 처	02-3153-8213